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1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서천호·김미애

정성국 · 김선교 · 박수영

김상훈 • 한지아 • 최수진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,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,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,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'무장애 관광'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,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무장애 관광(관광의 물리적·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)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무장애 관광(관광의 물리		
	<u>적·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</u>		
	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		
	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		
	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		
	<u>것을 말한다) 환경 조성 및</u>		
	지원에 관한 사항	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